

재 결 서

수용재결 :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7. 6. 30.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 결 서

사 업 명 :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소 유 자 : 조규식

재 결 일 : 2017. 6. 30.

이 건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을 수용하고, 손실 보상금은 금12,190,000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17. 8. 9.로 한다.

이 유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위

사업시행자 진도군수는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인가 받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진도군 고시 제2016-10호, 2016. 3. 3., 같은 고시 제2016-31호, 2016. 5. 25.)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위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소유자 사망, 소유자 거소불명, 상속자 보상이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에 이르렀다.

나. 적법성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재결신청 경위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볼 때 이 건 물건의 수용재결 신청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소유자 주장

「토지보상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원회 판단

가. 거소불명 사항에 대하여는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진도군수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진도군 공고 제2017-221호, 2017. 5. 11.)를 하였으므로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물건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12,190,000원**(보상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함)을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

4. 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은 본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017. 8. 9.**로 한다.



별지 1 - 보정액 대역(물건)

【사업명: 진도읍 농촌증심지 활성화사업】

(단위:원)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모	면적(㎡)및 수량	단위	보정액		물건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종류	비고
							단가	금액						
합계		1건						12,190,000						
1	진도읍 동외리	838-1	주택및창고	목조스케트	76	㎡	152,500	11,590,000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838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838	조규식		
				기주	6	㎡		300,000						
				대문	1	식		300,000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정병섭



위원

강남진



위원

김병곤



위원

박인출



위원

문석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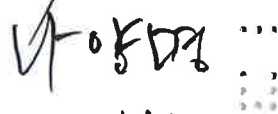
위원

이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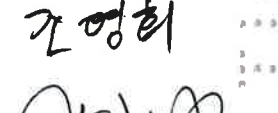
위원

나양명



위원

조영희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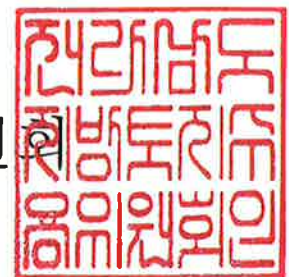
오진영



위 정보입니다.

2017. 6. 30.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간사 김홍

